

## 2015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 제22차 회의록

일시	2015. 12. 14. (월) 19:00-21:00	장소	협회 사무실
참석자	박종연, 이철환, 정은진		

### 1. 주요업무 보고 및 논의사항

#### □ 제주정보공개워크숍 참여

- 정보공개센터 & 법과정제연구원 주최 정보공개워크숍 12/4 제주대학교 진행
- 주제: '정부 3.0시대 지역사회 알권리 진단'

#### □ 기록관리 현안 관련

- 기록관리제도 연구반 구성 (12/23 두 번째 모임 진행)
- 12월 ~ 2016. 5까지 1차 운영
- 격주 수요일 저녁 7시 진행하며, 제도와 관련하여 개별 연구 및 의견 공유
- 학술논문 발표 및 보고서 제작 검토

#### □ 2015년 협회 송년회 '2015 쉼! 파티'

- 2015년 협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협회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문화행사로 추진
- 행사명: '2015 한국기록전문가 송년의 밤'
- 일시: 2015년 12월 18일 19시 NPO지원 센터 교육장 1(주다)
- 진행일정: 전체 사회 - 문찬일
- 18:30 ~ 19:00: 사전준비 - 꿀, 팥, 음료, 와인(간), 번호표, 참가자리스트, 영화다운로드, 노트북
- 19:00 ~ 19:15: 협회장 인사말(2015 현안관련 정리)
- 19:15 ~ 20:00: 영화상영(언어의 정원)
- 20:00 ~ 20:50: 선물교환 및 인사(참가자 모두 한 마디씩)
- 20:50 ~ 21:00: 정리 및 마무리
- 참석자 모두 1만원 이하의 선물 가져오기, 홍보 및 참석유도

#### □ 기록전문가 이진철 추모사업

- 추모사업 모금에 지원하는 것보다 최종 간행물을 출판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

- 1 -

2015. 12. 14. 한국기록전문가협회 3기 제22차 사무처회의

- 향후 출판 단계에서 협회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 협의

#### □ 사무처 조직개편

- 2016년 사무처 조직개편 (국제제로의 전환)
- 2016년 4기 집행부의 선출과 더불어 인수인계의 원활함 협회조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국제제로 조직개편을 추진
- 사무국, 교육국, 홍보국, 소통국을 부할
- 기존 집행위원들이 각국의 국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입 국원들을 모집하는 방법 검토

#### □ 2016년 제6차 정기총회

- 일정 2016. 1.23(토) 예정 - NPO지원센터(?) 15시-18시
- 2016년 사업계획(안), 예산(안), 정관개정, 규정개정 등 검토
- 정관개정 사안(검토안)

#### - 제5조 회원자격과 종류 개정 : 일반인의 협회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

정관 개정전	정관 개정후
제5조(회원의 자격과 종류) ②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학생회원, 명예회원,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	제5조(회원의 자격과 종류) ②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학생회원, 명예회원,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 <b>일반회원으로</b> 구분한다.

-> 관련 규정 변경 (회원관리규정 및 별표)

회원관리규정 개정전	회원관리규정 개정후
제1조(회원의 권리·의무·자격 및 가입절차) ③ 정회원 및 준회원, 학생회원의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협회가 추천 및 지명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명예회원과 협회를 후원하는 후원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.	제1조(회원의 권리·의무·자격 및 가입절차) ③ 정회원 및 준회원, 학생회원, <b>일반회원의</b>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협회가 추천 및 지명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명예회원과 협회를 후원하는 후원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.

일반 회원	권리	준회원에게 준하는 권리
	의무	준회원에게 준하는 협회비의 납부
	자격	기록관리 유관분야에 활동하거나 기록관리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일반인

#### - 제12조(임원의 선출) 개정

정관 개정전	정관 개정후
제12조(임원의 선출) ②협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	제12조(임원의 선출) ② <b>협회장과 감사는 협회장 임기종료 전년 11월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선출방식은 선거규정에 따른다.</b>

- 2 -

-> 관련 규정 변경 (선거관리규정)

선거관리규정 개정전	선거관리규정 개정후
제4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)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입후보자의 공고, 접수, 자격심사, 선거일정의 의결 및 공고	제4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)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b>선거방식의 공고</b> , 입후보자의 공고, 접수, 자격심사, 선거일정의 의결 및 공고
제6조(통상관례)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	제6조(선거방식) ① <b>선거는 호선으로 온·오프라인방식을 병행하며, 구체적인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.</b> ② <b>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 공고 이전에 세부적인 선거방식을 확정하여야 한다.</b>
신설	제7조(통상관례)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
- 제31조(지부의 설치)

정관 개정전	정관 개정후
제31조(지부의 설치) ①본 협회는 전국의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.	제31조(지부의 설치) ①본 협회는 전국의 각 지역에 <b>1개 이상</b> 의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-> 관련 규정 변경 (운영위원회운영 규정)

운영위원회운영 규정 개정전	운영위원회운영 규정 개정후
제2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정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부 및 분과의 대표는 해당 지부 및 분과의 대표로 선출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설립을 승인받기 이전의 준비모임은 아래의 각 호를 충족할 경우 그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한다. 1. 5인 이상의 정회원을 포함한 지부 준비모임(2014.4.14. 개정) 2. 1인 이상의 정회원을 포함한 5인 이상 협회원의 분과 준비모임 ② 지부 및 분과,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준비모임의 대표가 공석일 경우, 그 운영간사에게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	제2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정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부 및 분과의 대표는 해당 지부 및 분과의 대표로 선출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b>이하 삭제</b> ② 지부 및 분과 ( <b>삭제</b> ) 대표가 공석일 경우, 그 운영간사에게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

- 제35조(회계연도)

정관 개정전	정관 개정후
제35조(회계연도)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(윤달의 경우 2월 29일까지)까지로 한다.(2011.3.12개정)	제35조(회계연도)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<b>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</b> 로 한다.

- 제규정 변경사안에 대해서는 사무처 내부 검토 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

## 2. 기타사항

2016년 협회 사업계획(안)

- 별첨

- 사업계획(안)에 대해서는 사무처 내에서 충분히 검토 후 다음 회의를 통해서 확정

1	2	3	4	5	6
제6차 정기총회 기록학심화스터디 기록관리제도연구반 KARMA 제4호	기록학예비학교 기록학심화스터디 기록관리제도연구반	부산지방총회 정책토론회 1차 기록학심화스터디 기록관리제도연구반	기록학심화스터디 기록관리제도연구반	인문학강좌 기록관리제도연구반 민간기록관리실습	정책토론회 2차 여름학습반 민간기록관리실습
7	8	9	10	11	12
제4회 아키비스트캠프 여름학습반 민간기록관리교재개발 KARMA 제5호	민간기록관리교재개발	정책토론회 3차 2016 ICA 서울총회	전국기록인대회	임시총회(협회장선출)	정책토론회 4차 송년의 밤

■ 다음회의

일시	2016. 1. 4 (월) 19:00 ~	장소	협회 사무실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